

수산물질병(위해요소) 확인의 절차 및 방법

1. 수산물질병(위해요소)확인 정의

수산물질병(위해요소)확인란 특정한 지정검역물 등의 수입으로 우리나라에 잠재적으로 유입될 수 있는 병원체(Pathogen)의 목록을 작성하는 과정을 말한다.

2. 수산물질병(위해요소)확인 절차

가. 지정검역물 등의 수입과 관련하여 수산물질병(위해요소)이 확인되면 위험평가 단계를 진행한다.

나. 위해요소가 확인되지 않으면 수입위험분석을 마칠 수 있다

다. 위험평가를 진행할 때 병원체가 수출국에 존재할 가능성과 병원체의 역학적 특성 등 과학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평가해야 한다.

3. 수산물질병(위해요소)확인 수행 방법

가. 잠재적인 수산물질병(위해요소)들의 목록 작성: 해당 지정검역물 등과 관련이 있는 병원체의 목록을 작성한다. 이 목록에 위험이 명확하지 않은 병원체도 포함시킬 수 있다. 목록을 작성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다.

- (1) 과학적인 문헌 및 통계자료
- (2) 해당 지정검역물의 수입경로
- (3) 해당 지정검역물과 관련된 병원체에 의한 다른 국가의 피해사례
- (4) 수산물 관련 및 수입위험분석 분야 전문가의 자문
- (5)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에서 지정한 수산물질병의 병원체

나. 수산물질병(위해요소) 결정을 위한 기준 적용: 해당 병원체를 위해요소로 분류할 것인지를 판단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 (1) 해당 지정검역물과의 관련성
- (2) 우리나라에 감수성 생물종이 존재하는 지 및 그 분포상황
- (3) 우리나라의 감수성 생물종에 심각한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지
- (4) 우리나라 및 수출국에 병원체가 존재하는지
- (5) 수출국에 병원체가 존재하는 경우, 수출국 주무관청의 질병관리 상황(질병발생의 보고, 제어·박멸 제도의 가동)
- (6) 세계동물보건기구의 보고 대상 병원체로 등재되어 있는지

(7) 우리나라와 수출국에 모두 병원체가 존재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조건을 검토

(가) 수출국의 병원체가 고병원성 계통(Strain)인지

(나) 해당 병원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상세한 위험평가가 필요한지

(다) 국내에 해당 병원체가 발생하지 않은 지역 또는 발생수준이 낮은 지역이 존재하는지

4. 수산생물질병(위해요소) 최종결정

가. 해당 병원체의 특성을 파악하여 위해요소를 확인한 후 목록을 작성한다.

나. 최종 수산생물질병(위해요소) 확인을 위해 사용한 모든 정보는 문서화한다.